

의안번호	2206866
의 퇴 인	민홍철 의원
회 답 일	2025. 1. 15.
추 계 번호	24B62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778억 4,000만원(연평균 1,555억 6,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도로안전시설 (안 제54조의2)	155,568	155,568	155,568	155,568	155,568	777,840	155,568

주: 1. 일반국도 중 보도 설치 구간의 비율(8%)이 지방도 등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보도 설치 구간의 50%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도로안전시설 설치 구간 및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4조의2(보도 진입 방지시설의 설치) 신설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4조의2(보도 진입 방지시설의 설치) 신설	○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도로관리청¹⁾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1) 도로의 종류 및 관리청

등급	정의	관리청
고속국도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대행)
일반국도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관내는 해당 시장)
특별·광역시도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구역 내의 도로	특별·광역시장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도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건설하는 도로	도지사
시도	시 구역 내의 도로	시장
군도	군 구역 내의 도로	군수
구도	구 구역 내의 도로	구청장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발췌

것으로, 본 추계에서는 현재 보도가 설치된 도로 구간의 약 50% 구간에 대해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소요비용을 추계함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교통사고 발생 우려 구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안 제54조의2 신설)
 -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안전시설의 설치 대상 도로 기준, 안전시설의 종류 등을 알 수 없음
 - 본 추계에서는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보도가 설치된 구간 중 50%를 교통사고 발생 우려 구간으로 가정하여, 해당 구간에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일반국도 중 보도 설치 구간의 비율(8%)이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도 같은 비율이라고 가정
 -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국토교통부의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예산상 단가를 참고하여 2억원/km(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미포함) 적용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보도 설치 구간 중 방호울타리 등의 설치 현황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전체 보도 설치 구간 중 50%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대상 및 재정소요

(단위: km, 백만원)

구 분	연장 (A)	보도설치 구간 (B=A×8%)	교통사고 발생 우려 구간 (C=B×50%)	안전시설 설치 단가(D)	재정소요 (E=C×D)
합 계	97,230	7,778	3,889	200	777,840
일반국도	14,090	1,127	564	200	112,720
특별·광역시도	5,211	417	209	200	41,688
지방도	16,370	1,310	655	200	130,960
시도	28,037	2,243	1,122	200	224,296
군도	17,131	1,370	685	200	137,048
구도	16,391	1,311	656	200	131,128

자료: 국토교통부

-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안전시설을 추계기간(5년) 중 균등하게 배분하여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간 7,778억 4,000만원(연평균 1,555억 6,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도로안전시설	155,568	155,568	155,568	155,568	155,568	777,840	155,568

주: 1. 일반국도 중 보도 설치 구간의 비율(8%)이 지방도 등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보도 설치 구간의 50%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도로안전시설 설치 구간 및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일반국도 중 보도 설치 구간의 비율(8%)이 지방도 등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보도 설치 구간의 50%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도로안전시설 설치 구간 및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